

* 최신정보

질병 예방본부(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 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 편집실

2008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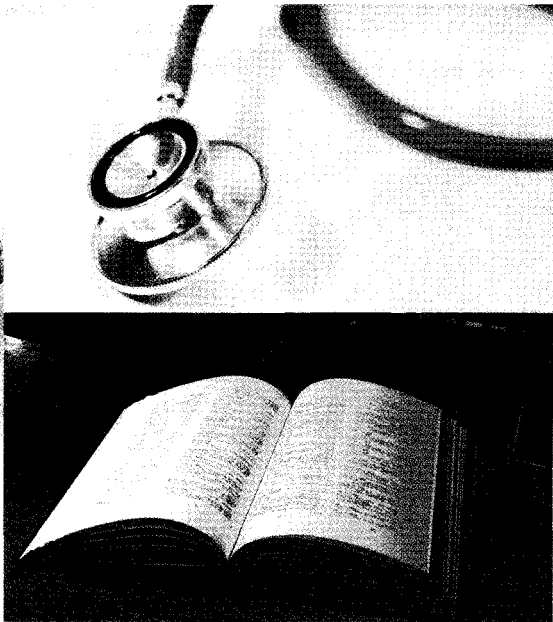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만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 개정안'은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왔던 HIV/AIDS 감염인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그 첫 번째 조치가 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행법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던 정부인과 현애자 의원의 전면개정안은 법사위의 끊임없는 심의과정 속에서 대안의 형태로 절충되어 통과되었지만, HIV/AIDS 감염인의 삶에 족쇄로 기능 해왔던 일부 법안을 부분적이거나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거뒀던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스스럼없이 조기 검

진을 익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과 HIV/AIDS 감염인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효과적인 에이즈 대응전략에 한층 다가선 국가 질병관리정책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애자 의원은 "HIV는 전파경로가 명확히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인 편견과 차별, 무관심이 감염인들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고 음지로 숨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며, "비록 부분수용으로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인권증진을 통한 예방으로 가는 이 첫걸음이 앞으로 더 큰 변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며, "하지만 온전히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호로 가기엔 갈 길이 멀다며, 원안을 기초로 후속 개정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①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 유도과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였다. 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판정을 받으면 실명으로 지역보건소와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은 더욱 움지보 숨게 되고, 신분 노출을 꺼려 적절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보건관 등에서도 에이즈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게 익명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감염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익명으로 감염인을 지원, 보호할 수 있다.

(예방법(취진) 제8조 1항)

② 개인의 에이즈 감염 상태가 불필요하게 직장에 알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직원의 에이즈 감염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에이즈 검진 결과는 반드시 밀봉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방법(검진) 제8조 1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

견 방지와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 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했다.

(예방법 제3조, 국가 지방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④ 감염인이 입원·퇴원·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의요기관에게 부과되었던 신고의무를 사망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 감염인 또는 세대주에게 부과했던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요기관등의 신고)1항, 2항, 3항) 아울러,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강제처분대상도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본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예방법 개정은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변화가 필요함을 선진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앞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법안의 각 조 및 항은 변경될 수 있음)